문화창조융합벨트 금융 지원
업 무 협 약 체 결

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는, 한국콘텐츠진흥원, 문화창조융합센터, 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수출입은행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예탁결제원, 성장사다리 펀드(이하 "협력기관"이라 한다.)와 문화창조융합벨트 및 문화콘텐츠 산업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협력기관이 상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 및 문화 콘텐츠 산업에 금융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문화융성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.

1.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문화창조 금융존을 설치·운영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의 편익을 도모한다.

2. 문화창조융합센터, 문화창조벤처단지,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과 연계하여 크라우드 펀딩 지원, 금융 컨설팅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, 문화창조융합벨트 全과정을 지원한다.

3. 문화 콘텐츠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'기업투자정보마당' 내 문화 콘텐츠 특화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.

4. 문화 콘텐츠 크라우드 펀딩 전문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자금 지원 확대를 도모한다.

5. 기업은행의 문화콘텐츠 거점 영업점 확대 및 기술보증기금의 문화콘텐츠 금융센터 개소를 추진하여, 문화 콘텐츠 금융 접점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.

제3조(실무협의 및 자문) 각 기관은 원활한 공동 협력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각 기관은 상호간 업무상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.

제4조(협의조정 및 비밀유지) 제2조 규정에 따른 협력분야 이외 사항은 별도로 협의·처리하며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정보를 본 사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협약성의 이행) 각 기관은 상호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약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.

제6조(기타사항)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구체적인 실천 사항, 업무일정, 효력기간 등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로 합의하여 시행한다.

2016년 2월 26일

문화체육관광부
장관 김 종 덕

금융위원회
위원장 임 종 룡

한국콘텐츠진흥원
원장 송 성 각

한국산업은행
회장 이 동 걸

문화창조융합센터
센터장 강 명 신

중소기업은행
은행장 권 선 주

신용보증기금
이사장 서 근 우

기술보증기금
이사장 김 한 철

한국예탁결제원
사장 유 재 훈

한국수출입은행
은행장 이 덕 훈

㈜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
사장 이 동 춘